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18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임문영 · 권향엽 · 박해철
박균택 · 양부남 · 김 윤
임미애 · 김성범 · 송재봉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 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6조제7항).
- 나.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종사자를 제지·퇴거명령의 주체에 추가함(안 제56조제8항·제9항 및 제67조의2).
- 다. 질서유지종사자가 위반행위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안 제56조제10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포함한다),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질서유지종사자는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누구든지 여객터미널(여객의 탑승수속·대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여객터미널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내에 따르는 경우나 긴급한 대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기선, 차단봉, 통제선 등 여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표시 또는 시설을 넘거나 통과하는 행위
2.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거나 뛰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질서유지종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질서유지종사자는 여객터미널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제9항에 따른 조치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의2 중 “제56조제7항”을 “제56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금지행위)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56조(금지행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누구든지 여객터미널(여객의 탑승수속·대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여객터미널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내에 따르는 경우나 긴급한 대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 <u>1. 대기선, 차단봉, 통제선 등 여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표시 또는 시설을 넘거나 통과하는 행위</u> <u>2.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거나 뛰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u>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질서유지종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

----- 포함한다),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질서유지종사자는 제6항 또는 제7항-----
-----.

⑩ 질서유지종사자는 여객터미널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제9항에 따른 조치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u>제56조제7항</u>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u>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u>제56조제9항</u>----- ----- -----.
--	--